

李羲秀 수산청정

動 靜

日, 94어항예산

2천3백34억엔

일반정부는 최근 예산을 73조 8백 17억에 으로 결정했다.

계사업의 확장화가 되어 출정비사업 창설 등과 함께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, 연안신시대를 위한 어항어촌 충합전략을 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.

관도를 대내정부의 주권을 확장하는 데에 의해 종래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△어항어촌총정비사업의 창설 △어항교류 광장정비사업 창설 △자연조화형 어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.

# 연 안 신 시 대 돌 입

# 9차 정비 계획 1차년도 시발

PQ 입찰 때 등적용

기술관련법에 의한 건설부는 올부터 업체의 시장구조평가 결과를 공시 발표, 노동부는 노동 산정 또는 P.Q.인증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.

을  
같이하는 이들(업체)  
별 시 공평하고 결과  
침은 건설업계의 체질을  
종전의 가격경쟁위주에서  
풀질경쟁위주로 변모시키  
게 될 촉진제 역할을 한  
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가행은 말하기 서서를 왕제  
된다. 을 투자기관에서 빌려한 30  
고려해 산출해 내게  
의 평균하자 발생비율 등  
여원 92년까지는 10억원  
이상 공사중 최근 3년간

| 94年度 日本國 漁港關係事業總括表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(金額)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年 度 當 初 成 立        |          | 94 年 度 政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分                  | NTT      | 計           | 通 常 分       | NTT   |       |
| 費                  | 國 費      | 國 費         | 國 費         | 前年比   | 國 費   |
| (72)               |          | (28,398.72) | (28,603.00) |       |       |
| 72                 | 1,488.28 | 214,260.00  | 214,952.00  | 1,010 | 1,355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0.91  |

### 94年度 日本國 漁港關係事業總括表

(金額単位：百萬円)

| 事 項                   | 93 年 度 當 初 成 立 |          |             | 94 年 度 政 府 案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通 常 分          | NTT      | 計           | 通 常 分        | NTT   |          | 合 計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國 費            | 國 費      | 國 費         | 國 費          | 前年比   | 國 費      | 前年比         | 國 費        |
| I. 漁 港 豫 算            | (28,398.72)    |          | (28,398.72) | (28,603.00)  |       |          | (28,603.00) |            |
| 1. 漁 港 漁 村 整 備        | 212,771.72     | 1,488.28 | 214,260.00  | 214,952.00   | 1.010 | 1,355    | 0.910       | 216,307.0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28,398.72)    |          | (28,398.72) | (28,603.00)  |       |          | (28,603.00)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208,497.72     | 1,180.28 | 209,678.00  | 210,336.00   | 1.009 | -        | -           | 210,336.0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24,161.00)    |          | (24,161.00) | (24,383.00)  |       |          | (24,383.00) |            |
| 修 築 事 業               | 123,461.00     | -        | 123,461.00  | 122,080.00   | 0.989 | -        | -           | 122,080.0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2,469.00)     |          | (2,469.00)  | (2,504.00)   |       |          | (2,504.00)  |            |
| 改 修 事 業               | 56,975.00      | -        | 56,975.00   | 48,641.00    | 0.854 | -        | -           | 48,641.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455.00)       |          | (455.00)    | (679.00)     |       |          | (679.00)    |            |
| 局 部 改 良 事 業           | 11,571.00      | -        | 11,571.00   | 13,803.00    | 1.193 | -        | -           | 13,803.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27,085.00)    |          | (27,085.00) | (27,566.00)  |       |          | (27,566.00) |            |
| (3 事 業 計)             | 192,007.00     | -        | 192,007.00  | 184,524.00   | 0.961 | -        | -           | 184,524.00 |
| 公害防止対策事業              | 24.00          | -        | 24.00       | 40.00        | 1.667 | -        | -           | 40.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695.72)       |          | (695.72)    | (419.00)     |       |          | (419.00)    |            |
| 漁業集落環境整備事業            | 6,579.72       | -        | 6,579.72    | 8,348.00     | 1.269 | -        | -           | 8,348.00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618.00)       |          | (618.00)    | (618.00)     |       |          | (618.00)    |            |
| 漁港環境整備事業              | 2,417.00       | -        | 2,417.00    | 3,142.00     | 1.300 | -        | -           | 3,142.00   |
| 漁港漁村總合整備事業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| 3,369.00     | -     | -        | -           | 3,369.00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1,313.72)     |          | (1,313.72)  | (1,037.00)   |       |          | (1,037.00)  |            |
| (環境關係事業計)             | 9,020.72       | -        | 9,020.72    | 14,899.00    | 1.652 | -        | -           | 14,899.00  |
| 調査費補助                 | 58.00          | -        | 58.00       | 58.00        | 1.000 | -        | -           | 58.00      |
| 調査費                   | 133.00         | -        | 133.00      | 135.00       | 1.015 | -        | -           | 135.00     |
| 作業船整備費                | 8.00           | -        | 8.00        | 13.00        | 1.625 | -        | -           | 13.00      |
| 補助率差額                 | 7,271.00       | 1,180.28 | 8,451.28    | 10,707.00    | 1.473 | -        | -           | 10,707.00  |
| 2. 漁 港 關 聯 道 整 備      | 4,274.00       | -        | 4,274.00    | 4,616.00     | 1.080 | -        | -           | 4,616.00   |
| 漁港關聯道整備事業             | 4,037.00       | -        | 4,037.00    | 4,379.00     | 1.085 | -        | -           | 4,379.00   |
| 補助率差額                 | 237.00         | -        | 237.00      | 237.00       | 1.000 | -        | -           | 237.00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28,398.72)    |          | (28,398.72) | (28,603.00)  |       |          | (28,603.00) |            |
| (1 + 2)               | 212,771.72     | 1,180.28 | 213,952.00  | 214,952.00   | 1.010 | -        | -           | 214,952.00 |
| 3. NTT - A型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308.00   | 308.00      | -            | -     | 1,355    | 4.399       | 1,355.00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2,149.00)     |          | (2,149.00)  | (2,144.00)   |       |          | (2,144.00)  |            |
| II. 海 岸 豫 算           | 16,176.00      | 19.00    | 16,195.00   | 16,642.00    | 1.029 | -        | -           | 16,642.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860.60)       |          | (860.60)    | (708.60)     |       |          | (708.60)    |            |
| 海岸保全施設整備事業            | 11,396.20      | -        | 11,396.20   | 11,409.20    | 1.001 | -        | -           | 11,409.2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1,235.40)     |          | (1,235.40)  | (1,435.40)   |       |          | (1,435.40)  |            |
| 海岸環境整備事業              | 3,802.00       | -        | 3,802.00    | 4,084.00     | 1.074 | -        | -           | 4,084.00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53.00)        |          | (53.00)     | (0.00)       |       |          | (0.00)      |            |
| 公有地造成護岸等整備事業          | 226.00         | -        | 226.00      | 232.00       | 1.027 | -        | -           | 232.00     |
| 漁港海岸調査費               | 28.80          | -        | 28.80       | 28.80        | 1.000 | -        | -           | 28.80      |
| 補助率差額                 | 723.00         | 19.00    | 742.00      | 888.00       | 1.228 | -        | -           | 888.00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2,149.00)     |          | (2,149.00)  | (2,144.00)   |       |          | (2,144.00)  |            |
| (小 計)                 | 16,176.00      | 19.00    | 16,195.00   | 16,642.00    | 1.029 | -        | -           | 16,642.00  |
| III. 災 害 復 舊 豫 算      | 771.00         | -        | 771.00      | 424.00       | 0.550 | -        | -           | 424.00     |
| IV. 漁 港 事 業 指 導 監 督 費 | 18.97          | 6.93     | 25.90       | 18.97        | 1.000 | 6.64     | 0.958       | 25.61      |
| 計                     | (30,547.72)    |          | (30,547.72) | (30,747.00)  |       |          | (30,747.00)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229,737.69     | 1,514.21 | 231,251.90  | 232,036.97   | 1.010 | 1,361.64 | 0.899       | 233,398.61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1,009)        |          | (1,009)     | (1,009)      |       |          | (1,009)     |            |

(注) 1. 上段 ( ) 内書는 從來產業投資特別會計社會資本整備勘定의 公社事業分으로 되어 있다. 舊 NTT-B 分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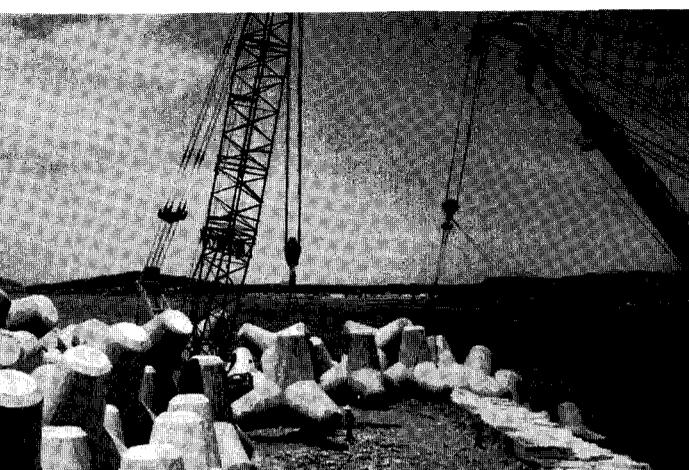
2. 94年度 内示額이다. 本表外에 NTT(B型) 事業償還時補助、漁港事業 61,871,490千円

漁港海岸事業 4,568,959千円이 있다.

# 不實防지 기대

건설협회 공표  
가격 참고 기로

## 정부, 건설노임 현실화



■ 행정재신위원회가 노임단가 현실화 방안을 의결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숙원이었던 정부노임단가가 현실화가 실현되게 됐다

행정재신위원회가  
단가 현실화 방안을  
함으로써  
건설업체의  
숙원이었던  
정부노임단가  
정고시하는  
노임단가를  
통제법에 의해  
통제작성  
승인을 받은  
기관이  
작성

한 가격과  
연계 토록 하는  
것으로 건설노임은 대  
한 건설협회가  
가격을 참고로 해  
현실화  
될 전망이다.  
이번 행정재신위원회의  
결정은 물가 상승의 우려에  
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근절  
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표

9% 까지 절감하고 있다.  
90년 51.7%로  
86년 85.3%로  
72년 74억 원(1  
억 원) 기준, 약  
6천 4백 원(1  
조원) 줄어들 경우  
1조원(1개회사당  
6억 원) 격차가  
완전 해소됐  
을 경우 2조  
7천 원(1  
개회사당 16억 원)에 이를  
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## 건설면허기준 대폭 완화

시행령 개정예고 관리단체 협의거쳐

건설업면허기준 완화, 일부  
포장특수면허 폐지, 일부  
전문건설업체 신설 등의  
내용이 포함된 건설업법  
이달 말 개정안이 빠르면  
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 
된다. 일법에 고될 전망  
이다.

전시행령 개정은  
1월 공포된 개정건설  
법의 시행에 앞서 주진  
되는 것으로 부실공사  
방지 대응한 면허제정비  
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전  
문화와 경쟁력 강화 등에  
특히 개정안은 건설업  
면허주기를 1년으로  
경우에는 세부단위  
지대책의 실행과 시장개  
선점이 맞춰져 있다.

## 업계 부찰제도 도입 촉구

건설업계는 낙찰자 결  
정에 있어 가장 공정성을  
기할 수 있고 건설업체에  
적정 공사비를 보장함으  
로써 성실한 시공을 유도  
하는 등 시행상 부작용이  
제로화를 추구하고 있다.  
제도입을 예상하는 부작  
용은 예상가격에 1백%  
이상이나 10%를 초과하는  
경우에는 예상가의 85%  
중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
최근에는 예상가의 85%  
가 입찰자에게까지  
있다고 지적했다.

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 
착찰자가 2인이 나오는  
경우에는 예상가의 85%  
중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
최근에는 예상가의 85%  
가 입찰자에게까지  
있고 지적했다.

이는 건설시장 개방과  
관련 업체의 종합 능력 배양  
이 요구되는데다 기술경  
쟁력을 확보를 위해 공공공  
사의 터키 발주량을 늘려  
나가기로 한 정부방침을  
해석된다. 기술경쟁력을  
증진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 
제로화를 추구하고 강조했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민 유치하기 위한 관리제  
는 협력이 큰 만큼 업계의  
마음 커지게 됐다.

는 협력이 큰 만큼 업계의  
마음 커지게 됐다.

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  
로 지적되고 있다.

4월 14일 국회의원회  
에서 개최된 사회간접  
자본 확충방안 모색을 위  
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  
기 선임연구원(한국개발  
연구원)은 현재 우리나라  
는 사회간접자본의 절대  
부족으로 기업의 물류비  
율을 가중시켜 막대한 경  
관에서 재정투자의 확  
증에 적정한 수준으로 확  
증키 위해 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 등 당초 시안에 포  
조정될 전망이다.

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 
서 마련한 시장을 토대로  
건설관련단체와의 협의 절  
차를 진행중이며 이 과정  
에서 건설업종 및 공사분  
류조정, 면허기준 완화, 조정·기술능력 인정제의  
도입

